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부행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부행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비상계엄을 저지한 국민의 용기와 행동을 기념하고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2월 3일을 '12·3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며,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2025.11.11.)」제정에 따라 기념일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부행사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제7조 신설

나. '별표 1' 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에 '12·3국민주권의 날' 신규 지정

다. '별표1' 제19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

4. 주요 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빛의 위원회, 고용노동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정부행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제1항,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행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행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별표 1 제56호부터 제57호까지를 각각 제57호부터 제58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5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19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한다.

번호	기념일	날짜	주관 부처	행사 내용
19	<u>노동절</u>	5. 1.	고용노동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로의욕을 더욱 높이는 행사를 한다.
<u>55</u>	12·3국민주권의 날	12.3.	<u>빛의 위원회</u> (행정안전부)	<u>비상계엄을 저지한 국민의 용기와 행동을 기념하고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정신을 계승하는 행사를 한다.</u>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연 락 처	(02) 2100 - 4080